





## 2. 시험과목

(비공개 시험과목: 굵게 밑줄)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 1회 공개경쟁	8급	간 호	간 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 건 진 료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9급	행 정	일 반 행 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 무	지 방 세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기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 산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 서	사 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작개론, 정보봉사개론
		공 업	일 반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u>농업동역학개론</u> , <u>농작업기계학개론</u>
			일 반 전 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 반 화 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 반 농 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국어, 영어, 한국사, <u>가축사양</u> , <u>가축육종</u>
		녹 지	산 립 자 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u>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u>
		보 건	보 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국어, 영어, 한국사, <u>식품위생</u> , <u>식품화학개론</u>
		환 경	일 반 환 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도 시 계 획	국어, 영어, 한국사, <u>도시계획개론</u> , <u>토지이용계획</u>
			일 반 토 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 3회 공개경쟁	7급	행 정	일 반 행 정	필수(6):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시 설 관 리	시 설 관 리	국어, 한국사, 사회
		운 전	운 전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비 고

- 1) 각 과목은 20문항씩이며, 4지 택1형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 2) 시험시간은 각 과목별 20분입니다.
  - 3)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 점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4)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가 가능한 시험과목은 위탁 출제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개로 설정한 시험과목만 시험종료 후 본인의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5) **충청북도에서 자체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배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비공개 시험과목은 **굵게 밑줄**로 표기하였습니다.

## 3. 시험방법

시험명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면접시험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운전9급은 3차 시험에 실기시험(대형버스운전)이 포함됨

## ※ 비 고

-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합니다.
- 3)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10%를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7급의 경우, 영어, 한국사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대상으로 필기합격자를 결정함)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4)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5)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4.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급, 9급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7급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단, 아래의 경우 전국모집(거주지 제한없음)

시험명	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제2회 공개경쟁시험	공업9급(농업기계)	단양군
	녹지9급(조 경)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 1)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이면 충족합니다.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의 거주경력은 충청 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다.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생략>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 아. <생 략>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 ④ <생 략>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2022. 7. 5.부터 시행되는 사항(법 제82조 및 제89조)

비위면직자 (제82조 제1항 2호)	<p>&lt;생 략&gt;</p> <p>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기관 (제82조 제2항 1호)	<p>&lt;생 략&gt;</p> <p>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li> </ol> <p>&lt;생 략&gt;</p>
취업제한기간 (제82조 제3항 신설)	<p>&lt;생 략&gt;</p> <p>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li> <li>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li> <li>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li> <li>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li> <li>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li> <li>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li> </ol>
벌금 (제89조)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 자격·면허 응시자격(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시험명	계급	직 력	직 류	응시자격
제1회 공개경쟁	8급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제2회 공개경쟁	9급	전 산	전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li> <li>·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보안</li> <li>·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li> <li>·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li> </ul>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시 설	지 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제3회 공개경쟁	9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 ※ 비 고

- 1)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2) 자격·면허증 등의 유효(소지)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자격·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 (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수급·지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 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바-1.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희망자는 2022. 6. 30.(목)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직 력	직 류	임용예정기관	관할 보훈지청(연락처)
시설관리	시설관리 (보훈청추천)	충청북도	충북남부보훈지청 (043-299-6222)

- 3)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사. 기 타:**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공개경쟁시험	2.21.(월)~2.25.(금) (2.28.월)	4.30.(토) ~5.4.(수)	필기시험	4.15.(금)	4.30.(토)	5.16.(월)
			면접시험	5.16.(월)	5.25.(수)~5.27.(금)	6. 8.(수)
제2회 공개경쟁시험	3.21.(월)~3.25.(금) (3.28.월)	6.18.(토) ~6.22.(수)	필기시험	6. 3.(금)	6.18.(토)	7.29.(금)
			면접시험	7.29.(금)	8. 9.(화)~8.23.(화)	9. 8.(목)
제3회 공개경쟁시험	7.18.(월)~7.22.(금) (7.25.월)	10.29.(토) ~11. 2.(수)	필기시험	10.14.(금)	10.29.(토)	11.18.(금)
			면접시험	11.18.(금)	12.6.(화)~12.9.(금)	12.23.(금)

### ※ 비 고

-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sihum.chungbuk.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보(문자, 전화 등)는 하지 않습니다.
- 2)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지정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자격·면허증의 종류와 증명번호 등)을 등록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 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 5)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기간

-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접수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1522-0660)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2) 접수기간 및 시간

- 제1회 임용시험: 2.21.(월) 09:00 ~ 2.25.(금) 18:00
- 제2회 임용시험: 3.21.(월) 09:00 ~ 3.25.(금) 18:00
- 제3회 임용시험: 7.18.(월) 09:00 ~ 7.22.(금) 18:00

## 나. 응시수수료

1)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 8·9급 5,000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2) 응시수수료의 환급: 다음의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취소마감일 내)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되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전국 동시 시행되는 4.30., 6.18. 및 10.29.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선택하여 응시 할 수 있습니다.

2)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마감 후 변경이 불가 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 기준

4)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모집단위(계급 -직렬-직류(구분모집)-임용예정기관 등)는 변경이 불가하며, 모집단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1] ‘장애인 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영어, 한국사 시험과목 대체(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한함)

###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 1) 기준점수

구 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2018. 5. 12. 전 시험	2018. 5. 12. 이후 시험		
일 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실시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FL, TOEIC,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 등록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 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10.4.(화)~10.28.(금)]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 1) 기준점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2) 인정범위: 2017.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사전등록이 불필요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10.4.(화)~10.28.(금)]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인원: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다. 합격자 결정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합격자 결정방법: 모집단위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

##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li> </ul>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li> </ul>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유리한 것 1개만 적용</li> </ul> <p>※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p>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10%)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국가보훈처상담 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5%)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5)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 라.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직렬(직류)별 가산점

가) 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

#### 나) 행정직군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다)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붙임2] 직렬(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 참고)

구 分	8급 및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지원(의사상자 등)여부, 보훈(증서)번호, 가산비율,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3)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4)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11. 그 밖의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sihum.chungbuk.go.kr)에 공고합니다.
- 나.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라.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바.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사.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 220-2532 ~ 2535

- 붙임**
1.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제공안내
  2. 직렬(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